

[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시청 공고 제2026-65호]

고용보험기금 체납자에 대한 채권 압류 통지서(압류 금액 재변경) 공시송달 공고

고용보험기금 체납자에 대한 채권 압류 통지서(압류 금액 재변경)를 발송하였으나 ‘폐문부재’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,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,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.

2026. 10. 2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시청장



1. 건 명 : 고용보험기금 체납자에 대한 채권 압류 통지서(압류 금액 재변경) 공시송달
2. 근 거 :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, 행정절차법 제14조, 제15조, 보험료 징수법 제32조,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
3. 공고기간 : 2026. 10. 2. ~ 2026. 10. 16. (15일간)
4. 공고대상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송달불능사유
1	이○일	'62.8.15.	인천시 중구 신도시북로88번길 (이하생략)	독촉장 및 채권 압류 통지서 (압류 금액 재변경)	독촉장 및 채권 압류 통지서 (압류 금액 재변경)	폐문부재

5.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시청 지역협력과 이은영(전화 032-714-871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